

조달청 「물품구매(제조) 계약 특수조건」 수정개정(안) 관련 의견 요청

1. 조달청 신설개정(안)	2. 중앙회 수정 요청(안)	3. 조달청 수정(안)
① <u>관급자재</u>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 및 <u>공사 관계자(건설사업관리자, 공사도급계약자 등)</u>와 관급자재 이행계획을 사전협의한 후 계약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<u>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</u> ② 관급자재 계약이행계획서에는 <u>원·부자재</u> 확보계획, 납품·설치·검사 일정, 각 단계별 작업자 투입 계획, <u>현장업무 책임</u> 담당자 지정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전체공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	① 관급자재(<u>설치도 계약분에 한함</u>) 계약상대자는 <u>수요기관 요구 시</u> 수요기관 및 <u>건설사업관리자와</u> 관급자재 이행계획을 사전협의한 후 계약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<u>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.</u> ② 관급자재 계약이행계획서에는 <u>설치 관련</u> 원·부자재 확보계획, 납품·설치·검사 일정, 각 단계별 작업자 투입 계획, <u>업무 담당자</u> 지정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전체공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	① 관급자재(<u>설치도 계약건에 한함</u>)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 및 건설사업관리자와 관급자재 이행계획을 사전협의한 후 계약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계약 후 <u>14일 이내에</u>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. <u>다만 물품 특성에 따라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이행계획서 제출 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.</u> ② 관급자재 계약이행계획서에는 설치 관련 '원·부자재 확보계획, 납품·설치·검사 일정, 각 단계별 작업자 투입 계획, <u>현장업무 담당자</u> 지정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전체공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